

『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, 제3조)
 - 위 원 장 : (당초)구미보건소장 → (변경)부시장
 - 부위원장 : (당초)위원 중 호선 → (변경)구미보건소장
-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9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에 따라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부시장, 구미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